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	-----

제출년월일 : 1998.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 2. 2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된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조항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을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를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임.(안 제3조)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여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과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3항,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와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

5.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여행을 - - - - - - - - - - - - - - -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과 동조동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동조제3항,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와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3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 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 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 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5.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 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 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 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 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 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삭 제)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 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 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1996. 3. 1 조례 제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3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

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